

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-146호

둘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결정(변경)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(도로 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) 및 제19조(서면 등의 절차의 생략 등)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6년 5월 4일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1. 고 시 일: 2026년 5월 4일
2. 고시방법: 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고시내용: 둘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변경사항

구 분	도로명	도로구간		길이 (m)	폭 (m)	기초간격 (m)	기초 번호	설정 사유	관할 구역
		시작지점	끝지점						
변경 전	비룡로	적성면 괴정리 산176-6	적성면 괴정리 37-1	13000	9	20	1→186	삼산강북라인 주차장 조성 공사로 인한 도로선형 변경	순창 군
변경 후		적성면 괴정리 산176-6	적성면 괴정리 37-1	13000	9	20	1→186		



4. 변경사유 : 도로구간 선형변경

※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,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(063-280-3671)

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